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멕시코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칠레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페루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이탈리아 COVID-19 관련 한시적 해고제한법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중국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동향
- 프랑스 보조생식 관련 「생명윤리법」의 입법동향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칠레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손수림 |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I. 들어가며

칠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 부패인식지수에서 67점을 얻어 26위를 기록한바 우루과이의 뒤를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투명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가 2000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18위를 기록하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21세기에 들어 칠레의 청렴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펜타(Penta)¹, SQM², 카발(Caval)³사 등 칠레의 굴직한 기업들이 대형 부패스캔들을 일으켜 정부 및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부패인식지수(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고 인식됨)가 6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위 지수가 현지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인과 부패전문가, 현지 주재원, 외국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의 부패정도를 질문하는 설문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경제규모가 큰 칠레가 앞서 언급한 수준의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칠레의 반부패법제 및 제도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칠레는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상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 등의 지표에서도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고소득 OECD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즉 칠레는 직접적인 부패 관련 지

1 금융, 보험, 연금, 의료제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칠레의 지주회사/ 2014년 펜타 그룹의 회장 Hugo Bravo가 국제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환급 받은 돈이 우파 정당들의 정치 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2 세금 감면을 위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및 2013년 대선 당시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좌파 인사들에게도 정치 자금을 대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러 관련 인사들이 기소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3 당시 대선주자였던 Michelle Bachelet의 머느리인 Natalia Compagnon이 칠레중앙은행의 부총재 Andrés Luksic과 만나 카발이 1,0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당해 선거에서 bachelet이 당선되자 바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짐), 그 돈으로 카발사가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하여 대출과 부동산 매입에 관한 여러 관계인이 기소되었던 사건

표 이외에도 부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른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월등히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바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II. 법률 및 제도의 개선

1. 개설

학자들은 칠레의 투명성과 이를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민주주의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칠레는 1810년 독립을 선언한 후 1900년을 전후하여 의회주의 공화국 체제를 채택하며 정당들이 성장하였고, 이후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칠레는 1973년부터 시작된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16년여간의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당정치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중도좌파연합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이 피노체트 정권에 대항하며 피노체트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이끌어냈고,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승리하였다. 그 직후부터 피노체트 집권 당시 자행되었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체제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적 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칠레에는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칠레 정치권 역시 부패를 경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반부패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형사법의 개정

(1) 형사소송법

칠레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거듭하며 ① 형사재판법원(Oral Trial Criminal Court)과 보증법원(Guarantee Court)을 설치하여 부패 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고, ② 독립적인 공소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인정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③ 또한

4 박윤주 외,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6-08 연구보고서, 2016, 188면

5 임태균, “반당의 민주주의 역사와 반부패 제도의 성숙: 칠레와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0(1), 2017, 11면

칠레의 형법 체계를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변경하였다. 특히 ②에 관하여 검찰청은 1925년에 처음 헌법에 등장한 이후로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관련 규정이 개설되지 않아 검찰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이후 2000년에 이르러 헌법상 범죄조사 및 집행을 관할하는 자치기관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검찰청은 반부패특별팀을 가지고 있으며, 위 특별팀은 법조인, 회계사, 금융분석가로 구성되어 감사원장, 국가방위위원회, 경찰 등과 협력하며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칠레의 전체 검찰 중 10%가량은 반부패 전문, 다른 10%는 돈세탁, 조직범죄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검사라고 보고된 바 있다.⁶

(2) 형법 및 특별법

칠레는 2009년 법률 20393호로 「법인형사책임법(Establece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 en los Delitos que Indica)」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돈세탁, 테러자금조달, 자국 또는 외국 관료들의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위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부패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⁷ 고객의 벌금형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특히 동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지는 회사가 조직개편, 합병, 인수, 분할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승계회사에 전가된다. 결국 칠레는 이 「법인형사책임법」의 제정을 통해 중남미에서는 최초로 부패범죄에 대한 기업의 형사상 책임을 확립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동법에 기초하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은 후술한다.

또한 칠레는 2014년 법률 제20730호로 「로비법(Regula el Lobby y las Gestiones que Representen Intereses Particulares Ante las Autoridades y Funcionarios)」을 제정하여 로비활동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이를 뇌물수수와 구분하여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로비법」은 특정 직위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로비활동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 신고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웹사이트⁸에 게재된다. 이때 로비스트가 모든 로비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고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관료와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모임의 참석자와 모임 성격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로비스트와 만난 고위관료 역시 모임 후에 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를 거듭하며 동법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6 2013년부터 부패사건의 조사와 기소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개선되면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대거 착수되었고, 그 수는 1,431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7 회사 등 법인은 부패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처벌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이사 등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동법상 위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라면 법인이 면책될 여지가 존재한다.

8 <https://www.leylobby.gob.cl/> (최종방문일: 2021년 7월 14일)

2018년 11월 칠레는 제21121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51bis조에 규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대폭 확대하였고,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였다. 또한 몇몇 범죄에 대하여는 중죄(Felony)의 지위를 부여⁹하여 처벌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부패범죄를 「형법」에 포함시켰다.¹⁰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부패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뇌물죄 등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이후 2020년 6월경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업범죄가 「형법」 및 「법인형사책임법」에 추가(법률 제21227호¹¹ 및 제21240호¹²로 개정)되는 등 지속적인 법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부패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현황

1. 공직자에 관한 뇌물죄

(1) 공무원에 대한 뇌물(Cohecho)

칠레 「형법」상 '뇌물'의 의미를 서술하는 일반조항은 없으나 「형법」 제248조 이하 규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뇌물수수, 약속 등에 관한 공무원 등의 처벌 내용이 정해진다.

(2) 뇌물죄의 정의

뇌물죄는 국가공무원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이득(Personal Advantage)을 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수수, 동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칠레 「형법」상 범죄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중죄, 경죄, 과실범으로 분류된다. (제3조)

10 공무원의 대가성 행위 또는 부자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지위를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뇌물죄에 해당되도록 개정되었다.

11 동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속입수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실업 보험 혜택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처벌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 등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12 전염병 또는 유행병 발생시 위생조치 미준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그 직무에 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모든 공무원
(청탁의 존재 또는 이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 여부는 불문하는 것으로 개정, 각주9 참조)
- 그 직무에 관하여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모든 공무원
- 특수 공무상 범죄(횡령 또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 등)를 범할 것을 대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모든 공무원
- 위에서 언급한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증뢰자)

(3) 공무원의 정의

칠레 「형법」 제260조 「형법」상 공무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임명하였는지 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중앙행정국, 준재정, 시, 자치기관,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¹³

(4) 뇌물죄의 형량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뇌물죄의 유형과 공무원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뇌물수수에 대한 「형법」상 최대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청탁하거나 수수한 금액의 절반에서 최대 3배까지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이에 더하여 공직에 대한 일시 또는 영구 결격도 가능하다. 특별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라면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국가기관과의 계약 및 협약이 금지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이익의 수령이 금지되거나 이익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몰수될 수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환수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범행 내용의 경중에 따라 법인은 해산되거나 법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병과 가능한 처분으로는 관보 또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다른 신문에 판결문 초안을 게재하는 것과 당해 범죄에서 파생된 모든 물건 및 문서, 기기 등 기타 자산의 몰수, 당해 범죄에 관하여 법인이 투자한 내역이 있을 경우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몰수 등이 있을 수 있다.

13 칠레 행정법상의 공무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5) 선거비용 관련 금원수수 및 공여

칠레의 정치기부는 2016년 펜타, SQM 스캔들과 같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몇 차례의 부패스캔들 이후에 대대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2016년 법률 20900호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기여는 개인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은 정치자금 목적의 금품공여 등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도 이러한 정치적 기여를 할 수 없다(칠레 내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만이 정치적 기여를 할 수 있음). 정치적 기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한도나 통제의 내용은 선출되는 직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6) 접대 비용(선물, 여행, 식사, 접대 등)에 적용되는 제한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한도 등 제한의 정도를 정한 바는 없다. 다만 제18575호 법¹⁴의 제64조제5항에서 공직자나 제3자에 대한 어떤 성격의 선물(Gifts), 이익(Advantages) 또는 특권(Privileges)을 “요구(Requesting)”, “약속(Making Someone Promise)” 또는 “수수(Accepting)”하는 행위는 공공청렴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공식선물과 의전선물은 물론 예우와 예의 표현으로 관습이 인정하는 선물(다만, 그 예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음)은 금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문제된 접대의 내용이 이러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8년 1월 칠레 대통령총무처(the General Secretariat Ministry of the Presidency)가 발행한 「국정 투명성 및 정직성 지침(Transparency and Honesty of the State Administration)」은 위 금지조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장학금 지급, 특정 연회나 여행에 관하여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유료일지라도)과 같이 공공성을 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의 내용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 지침은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청하는 행위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사인간의 뇌물죄(Commercial Bribery)

과거 칠레 「형법」은 사인간의 이익 공여에 관하여 계약 협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바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인간의 뇌물, 그 중에서도 상사 뇌물죄는 2018년 11월에 법률 제21121호로 「형법」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체결, 경쟁입찰 등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경쟁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개인 또는 고용인이나 대리인은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

14 LEY ORGANICA CONSTITUCIONAL DE BASES GENERALES DE LA ADMINISTRACION DEL ESTADO

법」(법률 제20169/2007호)에 따르면 불법경쟁행위로 인해 영향(피해)을 받는다고 느끼는 제3자는 민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종료·금지 또는 그 효력의 종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3. 외국공무원의 부패(Foreign bribery)

(1) 규정의 내용

외국인 공무원의 부패는 2016년 개정된 칠레 「형법」(법률 제21121호) 제251bis조에 따라 규제된다. 외국공무원의 뇌물죄는 칠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속지주의(영토주의,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원칙의 예외이다. 이에 따라 칠레 법원은 칠레 국적이거나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죄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도 있다.

동 범죄는 뇌물 제공자에게 국제거래(또는 사업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수행 또는 직무해태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경제적 혜택이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다만 칠레 법제상 외국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인을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외국공무원의 정의

「형법」은 제251ter조에서 외국공무원의 의미를 규정한다.

-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의회, 행정, 사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
- 공공기관 또는 국영기업에서 외국을 위한 공적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
- 국제공공기구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

(3) 형량

「형법」상 외국공무원의 뇌물죄에 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7년에서 10년의 직무정지, 그리고 수뢰액의 2배에서 4배 사이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4. 기타 부패 관련 범죄

(1) 재무기록보관(Financial Record-Keeping) 및 정보제공 관련 규정

재무기록보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형사제재는 없다. 그러나 기업에 올바른 계정 유지의 의무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세법」 및 「기업법」의 규정들과 여러 행정규칙이 있다. 또한 재무기록의 보관, 관리에 관하여 기업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시장위원회(Comisión para el Mercado Financiero)가 있다.

다만 시장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금융시장위원회에 전달된 데이터상의 허위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제재가 있다. 주식거래에 관한 정보의 적절성(관련성/Relevance)은 「증권시장법」(법률 제18045호)의 여러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고, 동법에는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매매 결정이나 증권에 관련된 상업행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거나(Adulteration), 오용(Misuse), 은폐(Concealment) 또는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법률 중 제59조와 제60조는 주식시장의 남용(Abuse)과 관련된 범죄를 규율한다. 제59조는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제60조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주식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혜택을 얻기 위해 특권 정보(Privileged Information)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내부거래/Insider Trading), 보관 중인 가치(Value)의 부적절한 사용, 회계기록의 고의적 은폐 또는 제거 등이 포함된다.

(2) 직권남용죄(Influence-peddling)

동죄는 「형법」 제240bis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약이나 기업운영에 관여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위 계약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를 처벌한다.

(3) 공공자금 횡령죄

공공자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횡령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제233조)
- 직무유기 또는 중과실로 인한 횡령의 경우 처벌(제234조)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나 업무를 이용한 횡령의 경우 처벌(제235조)

이외에도 자의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경우 처벌(제236조)하거나, 국가기금의 소지자로서 그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이 상당한 이유 없이 집행을 거절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237조)이 있다.

(4) 보조금 사기(Grant Fraud)

「형법」 제239조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교육기관이나 자선단체를 사취하거나 사취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위 기관들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합법적인 이익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5) 불법적 거래(Unlawful Negotiation)

「형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개입해야 하는 협상, 조치, 계약, 각종 활동이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처벌한다. 동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원의 개입 여부 또는 손해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한다.

전술한 공무원 관련 부패범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소시효 규정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형사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범죄(Crímenes) 중 법정형이 종신형을 포함하는 경우는 15년, 그 외의 법정형의 경우라면 10년, 경범죄(Simples Delitos)의 경우 5년, 과실범(Faltas)의 경우라면 6개월로 한다. 위와 같은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한다. 이때 공무원의 경우 법률 제 21121호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공소시효 기간 중 출국한 경우라면 해외에서의 이틀이 국내에서의 하루로 계산된다.

(6) 돈세탁 범죄(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조항은 2003년 「돈세탁방지법(Crea la Unidad de Analisis Financiero y Modifica Diversas Disposiciones en Materia de Lavado y Blanqueo de Activos)」(법률 제1991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기초하여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시스템과 다른 경제분야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Unidad de Análisis Financiero, Financial Intelligence Unit, UAF)이 설립되었다. 동 기관은 은행과 금융기관, 환전소,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지노를 포함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여러 기관들의 정보를 요청, 확인, 검사하여 돈세탁이 이루어진 정황 또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그 기록을 검찰에게 송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UAF는 위 기관들에게 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나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위 법률이나 그 지침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IV.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

칠레 법제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20393호 「법인형사책임법(Ley de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법인 등은 동법이 법인에게 요구하는 부패에 방조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구성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 ②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권한 및 개입방법에 대한 규정 존재, ③ 사내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존재,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인증 방식의 확립을 포함한다. 각 법인들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증권 및 보험 감독원(Securities and Insurance Authority)이 해당 지역의 기업들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다만 칠레 검찰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상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Corpesca와 SQM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 내용이나 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공정, 청렴한 회사 운영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형사책임법」상의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2. 자진신고 책임감면합의(Leniency Agreement) – Conditional Suspension

칠레의 경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건부 소송절차 중단을 허용하여 검사 측과 피고 측간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는 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며, 기업은 그 합의의 조건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 수수한 뇌물의 반환, 지역사회기반 활동 또는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예로 세레시타(Ceresita) 사건을 꼽을 수 있다. Industrias Ceresita는 Receletta시의 건물 책임자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 과정에서 「법인형사책임법」(법률 20393호)에 따라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2013년 4월 30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내용에 따라 회사는 250만 달러가 넘는 금원으로 해당 지역의 공원과 인프라를 건설하였으며, 환경규정을 준수하며 지역의 환경개선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보건상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Receletta시에 있던 공장을 철수했다. 이외에도 칠레 재무부에 6,000평방미터의 부동산 부지를 기부하여 Receletta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스포츠 시설을 설치

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며, 위 지역의 모든 보건소에 호흡기질환에 관한 의료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이를 공식기관에 인증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조건부로 수사 중지되었다.

3. 국제기구 및 협정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the United Nations), 미주기구(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회원국이다. 또한 칠레는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CAC(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그리고 미주기구 부패방지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도 가입되어 있다.

V. 최근의 부패범죄

다만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 역시 부패 스캔들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형 부패스캔들 중 SQM 사건을 살펴본다.

Sociedad Química y Minera de Chile(SQM)는 리튬 채굴, 기타 화학물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칠레의 글로벌 화학·광업회사로 2015년 Michelle Bachelet 2기 정부에서 대형 부패스캔들에 연루되었다. 당시 SQM은 피노체트의 사위였다고 알려진 Julio Ponce Lerou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300명에 달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당파를 막론하고 여러 정당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천사백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QM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발행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인물들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SQM 사건에 관하여 180여 명이 기소되었고,¹⁵ 당시 재무부장관이었던 Alberto Arenas, 국세청장 Michel Jorratt 등 바철헤트 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사임했다. SQM은 부패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고 칠레 내부에서의 각종 보상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고 그 기소중지를 위한 형사 합의금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에 삼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15 다만 이중 다수는 조건부 기소중지를 통해 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SQM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부패범죄를 경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법」과 「기업형사책임법」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반부패 법률에 대한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SQM의 모든 임직원, 자회사, 계열사 및 SQM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국내외 사업장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적용한다.
- SQM이 대리점 계약, 하청계약, 컨설턴트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 상대방 역시 컴플라이언스 적용 대상이며, 중개인 또는 사업파트너, SQM 또는 그 자회사와 관련하여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제3자 등 SQM과 직·간접의 사업관계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도 그 대상으로 한다.
- 공무원 여부¹⁶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공여하는 것을 금지(금전, 물품, 접대, 투자기회 등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다. 상업적 뇌물도 마찬가지이다. ‘뇌물’의 범주는 칠레 법상 개념에 따르며, 개인의 건강, 안전에 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도 뇌물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 SQM은 일체의 정치적 기여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 및 그 관계자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할 수 없다.
-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SQM에 고용되거나 협업하는 모든 주체는 SQM에 관한 지출 정보를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하고, SQM은 그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하여 부패 방지를 위해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의 위반 시 고용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협력사의 경우 계약 종료 및 기타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한 SQM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위반한 주체에게 입찰 중단이나 취소 등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위에 언급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적용 대상자들은 보고 의무가 있으며, 부패 사실 또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즉시 상부에 보고하여 SQM 내부의 상사 윤리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

¹⁶ Public Official의 의미에 관하여 국가, 지자체의 모든 부서, 기관,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영기업 및 그 임직원도 포함되며, 공립 대학, 연구단체, 정당 및 그 관계자, 공직 후보자, 국제공공기구 임직원, 군인, 이외에도 각 하위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을 모두 그 대상으로 포섭한다.

IV. 나가며

현대사회에서 부패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칠레는 이미 라틴아메리카의 기준을 넘어 반부패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각종 거대 부패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칠레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부패스캔들만으로 칠레가 부패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칠레 고유의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바탕으로 칠레정부와 국민이 공통적으로 반부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칠레의 사법시스템과 법률, 각종 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음지로 숨었던 부패를 가시적으로 문제 삼고, 해결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함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칠레는 비록 몇 번의 부패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반부패를 위한 대책과 전략을 설계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부패와의 전쟁에서 칠레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박윤주 외,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임태균, “반등의 민주주의 역사와 반부패 제도의 성숙: 칠레와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17.
- 한동훈 외, “세계각국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교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CODIGO PENAL DE CHILE』(칠레 「형법」), Editorial Juridica de Chile, 2021.
- 『CODIGO PROCESAL PENAL DE CHILE』(칠레 형사소송법), Editorial Juridica de Chile, 2020.
- CREA LA UNIDAD DE ANALISIS FINANCIERO Y MODIFICA DIVERSAS DISPOSICIONES EN MATERIA DE LAVADO Y BLANQUEO DE ACTIVOS 돈세탁방지법(법률 제19913/2003호) - 금융정보분석원(UAF, Unidad de Análisis Financiero) 설치
- ESTABLECE LA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 EN LOS DELITOS QUE INDICA 형사책임법(법률 제20393/2009호)
- Ignacio Schwerter, “Chile – Global bribery offenses guide”, 2019, <https://www.dlapiper.com/en/us/insights/publications/2019/09/bribery-offenses-guide/chile/>
- Jorge Bofill Genzsch·Guillermo Chahuán Chahuán, “Anti-Corruption 2021”, 2020,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anti-corruption-2021/chile>
- Ley Chile, <https://www.bcn.cl/leychile/>
- LEY ORGANICA CONSTITUCIONAL DE BASES GENERALES DE LA ADMINISTRACION DEL ESTADO 행정조직법(법률 제18575/1986호)
- PARA EL FORTALECIMIENTO Y TRANSPARENCIA DE LA DEMOCRACIA 선거법(법률 제20900/2016호)
- Plataforma Ley del Lobby, <https://www.leylobby.gob.cl/>
- REGULA EL LOBBY Y LAS GESTIONES QUE REPRESENTEN INTERESES PARTICULARES ANTE LAS AUTORIDADES Y FUNCIONARIOS 로비법(법률 제20730/2014호)
- Sebastián Doren and Juan Ignacio Donoso, “The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Review: Chile”, 2020,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anti-bribery-and-anti-corruption-review/chile>
- SQM, <https://www.sqm.com/en/>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